

#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 예정일:** 2025년 3월 14일(금)

□ **대상 펀드**

- 1)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- 2)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- 3)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- 4) AB 미국 그로스 UH 증권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□ **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<b>투자결정시 유의사항</b>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정	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- 투자자 유의사항 - 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정	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정	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	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(97.5% VaR) 반영	<u>변동성</u>	<u>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)</u>

적합한 투자자 유형		<p>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<u>수익률의 변동폭을 의미하는 것으로, 수익률의 변동폭이 클수록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투자의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.</u></p> <p><u>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표: 표준편차</u></p> <p><u>주 1)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,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(156 주)간 펀드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)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.</u></p>	<p>삭제</p> <p><u>시장위험등급 기준표: 97.5% VaR 모형</u></p> <p><u>주1)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,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<math>\sqrt{250}</math>)를 곱해 산출합니다.</u>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예 따른 정정		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관련 표 추가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	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	<p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<b>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*</b></p> <p><b>* 환급비율: (과세대상소득금액 /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)</b></p> <p><b>단, 환급비율이 &gt;1 이면 1, 환급비율이 &lt;0 이면 0으로 함</b></p>	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사 등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(이자·배당소득)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.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연간 <u>400만원</u>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	연간 <u>600만원</u>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

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관한 과세 (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)		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(연간 <u>700만원</u> 을 한도로 함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단, 종합소득금액 <u>4,0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인 경우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적용	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(연간 <u>900만원</u> 을 한도로 함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단, 종합소득금액 <u>4,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인 경우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적용
			(분리과세 한도) - 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) - 연금소득이 1,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적용)

**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**

1. 재무정보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
**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라. 운용자산규모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